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안내서

2023.11.



Contents

| | |
|-------------------------------------|----------|
| I . 안내서 추진 개요 | 1 |
| 1. 목적 | 1 |
| 2. 용어 정의 | 2 |
| 3. 관련 법령 | 3 |
| 4. 적용 대상 | 4 |
| | |
| II .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체계 | 5 |
| 1.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 | 6 |
| 1.1. 개요 | 6 |
| 1.2. 주요 역할 | 6 |
| 2.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 7 |
| 2.1. 개요 | 7 |
| 2.2. 주요 내용 | 7 |
| 3. 심의 또는 자문 기구 | 8 |
| 3.1. 개요 | 8 |
| 3.2. 심의 및 자문 사항 | 8 |
| 4. 지식재산 현황 관리 시스템 | 9 |
| 4.1. 개요 | 9 |
| 4.2. 관리 시스템 | 9 |

| | |
|---|-----------|
| Ⅲ.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 주요 내용 | 10 |
| 1. 목적 | 10 |
| 2. 직무발명신고 | 11 |
| 3. 발명 인터뷰 등 | 15 |
| 4. 출원 전 심의 | 17 |
| 5. 지식재산의 권리화 | 19 |
| 5.1. 특허출원서 작성 및 심사청구 | 19 |
| 5.2. 특허의 등록 | 21 |
| 6. 지식재산의 활용 | 22 |
| 6.1. 자산실사 | 23 |
| 6.2. 기술실시 | 25 |
| 6.3. 양도 및 포기 | 31 |
| | |
| Ⅳ.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운영 결과의 제출 | 35 |
| 1.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 35 |
| 2. 운영결과의 제출 | 35 |
| | |
| [참고문헌] | 36 |
| | |
| [붙임-1] 직무발명신고서 (예시) | 37 |
| [붙임-2]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점검항목 (예시) | 38 |
| [붙임-3]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 (사례) | 39 |
| [붙임-4] 기술이전계약서 표준(안) (사례) | 54 |
| [붙임-5]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운영 결과 보고 (예시) | 65 |

I 안내서 추진 개요

본 안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위해 운영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 및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포기 등과 관련된 규정, 사례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성됨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체계 부문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 운영 규정, 심의 또는 자문기구 및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의 개요 및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에서는 직무발명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등 계약 및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포기 등에 대한 절차 등을 다루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의 필요성과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운영 결과의 제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1 목적

- 본 안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6항(시행일 2023.09.22)¹⁾이 신설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운영 중인 지식재산 관리와 관련된 규정의 운영 효율성 및 정합성 등을 제고하거나, 신규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지식재산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규정을 신규로 마련하고자 할 때 본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창출-관리-활용·확산 등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기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때 본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음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혁신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법령 |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혁신법 제2조제1호) |
|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혁신법 제2조제2호) |
|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연구개발 기관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주관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함)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성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성과 -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차보고서 등,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물질, 표준 등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혁신법 시행령 제 34조제1항) |
| 지식재산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 |
| 지식재산 |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과 기술료,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 기술료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혁신법 제2조제9호) |

3 관련 법령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은 운영규정에 따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혁신법 시행령을 개정
 - 기존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규정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의무를 삭제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토록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함

| 기 존 | 개 정 안 |
|---|--|
| <p>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③ (생략)</p> <p>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p> <p>〈신설〉</p> <p>〈신설〉</p> | <p>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경우 ----- ----- ----- -----.</p> <p>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p> <p>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

4

적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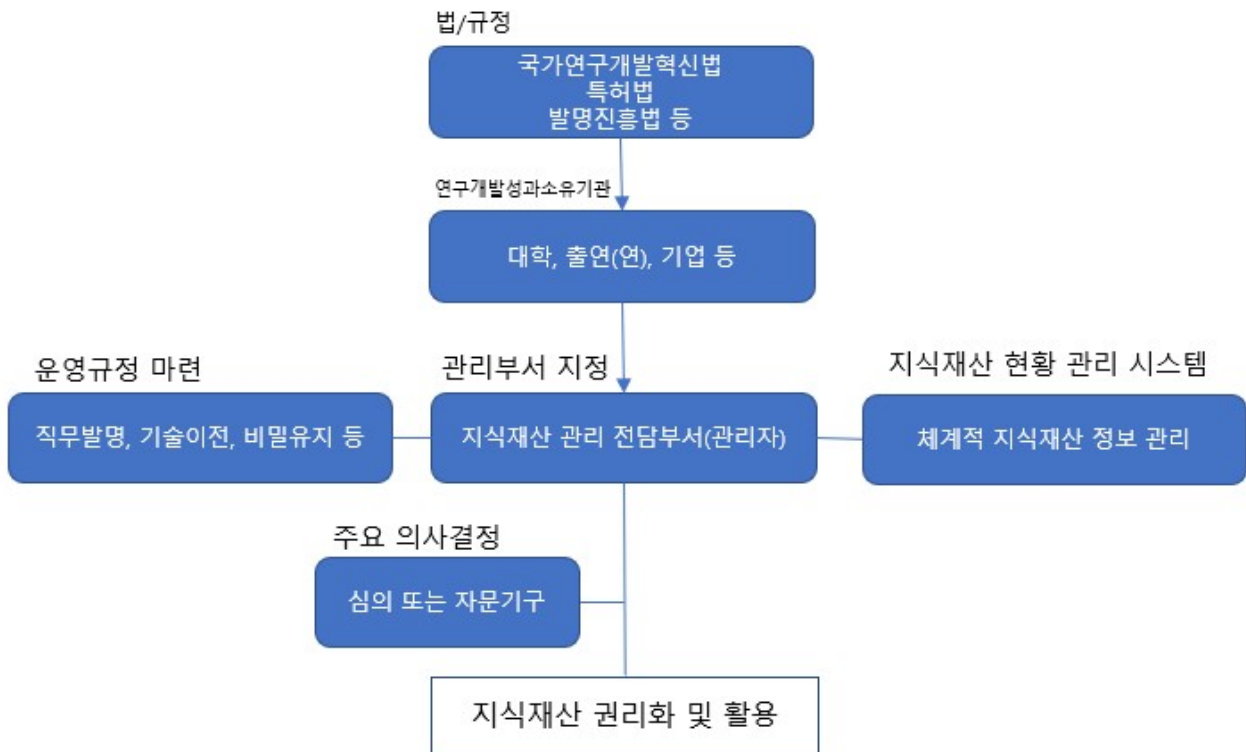
-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된 국내·외 등록된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에 따라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물을 대상으로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의 국내 민간(비영리단체나 대기업 등)이나 해외 등의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에는 적용하지 않음

II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체계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는 조직 내에서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구조와 절차를 포함하는 시스템으로서 관리부서의 지정, 운영 규정 마련, 심의 및 자문기구 마련과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지식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직무 간의 협업과 조정을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함



[그림] 지식재산 관리 체계

1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

1.1. 개요

■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관련된 운영 규정과 이에 따른 활동 등은 연구개발 기관에서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²⁾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은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해 선행 권리를 조사하고 직무발명자와 협력하여 차별화 요소 극대화 및 지식재산을 발전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는 연구자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기획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1.2. 주요 역할

■ 조직 내에서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식재산의 식별, 보호, 관리, 활용 등을 전담하게 하여 지식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전략 수립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고, 선행기술조사를 통한 특허맵 등을 작성하여 신기술의 트렌드 등을 예측하는 활동 수행
- 특허 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관리 : 개발된 신기술의 특허 출원을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발명을 신기술의 보호 범위를 넓게 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유 기술과 타 기관 보유 지식재산권과의 저촉 유무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
- 라이선싱 및 계약 관리 :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라이선싱을 통해 외부와의 협력을 구축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업무로서 기술적, 법적, 경영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리 수행
- 인식과 교육 : 조직 내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등을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확산시키는 역할

2)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나, 전담부서의 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식재산의 단순 관리 인력이 아닌 지식재산 창출 및 관리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2.1. 개요

-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운영규정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내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하여금 지식재산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법적인 문제나 보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활동을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2. 주요 내용

-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일관된 절차와 원칙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운영 규정에 포함될 수 있음
 - (지식재산 가치 제고)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성과인 지식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과 내용
 - (지식재산 관리) 보유한 지식재산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절차
 - (지식재산의 보호) 연구결과물이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
 - (지식재산 이전 등 활용) 보유한 지식재산의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위반 시 조치) 규정 위반 시의 조치와 제재 방법에 관한 내용
 - (투명성과 윤리) 이해관계자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거나 윤리적 책임에 관련된 내용

3 심의 또는 자문 기구

3.1. 개요

- 지식재산의 창출·관리·활용·보호 관련 사항의 검토 및 의사결정을 위해 기관 내·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또는 자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음

3.2. 심의 및 자문 사항

- 심의 또는 자문기구에서는 지식재산 관리 전담부서 등의 사전 검토 내용 및 자료를 토대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직무발명의 출원 여부 및 출원 국가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음
 - 또한, 신규 특허 출원이나 등록, 기술이전의 조건·협약 내용 등 기술 라이선싱 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의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하고 승인함

〈표〉 대학 내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사례

| 기관 | A 대학교 | B 대학교 |
|--------|--|--|
| 규정명 |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 B 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 심의 기구명 | 지식재산심의위원회 | 지식재산관리위원회 |
| 심의 내용 | 1.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권리 귀속, 기술적 평가, 출원 및 비용, 공동발명자 지분 비율,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유지, 보상금에 관한 것) 2.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1.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 2. 지식재산권의 유지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승계 포기에 대한 재심의 사항 4.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본교 상표권 행사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기술거래 계약 조건의 적합성 등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표〉 출연(연) 내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 사례

| 기관 | A 연구원 | B 연구원 |
|--------|---|--|
| 규정명 | 지식재산권 관리요령 | 직무발명규정 |
| 심의 기구명 | 특허심의위원회 | 특허심의위원회 |
| 심의 내용 | 1.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여부 2. 직무발명의 등급 및 출원국가 범위 3. 출원특허 또는 등록특허 유지포기 여부 4. 기여자 및 기여도의 적정성 5.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중요사항 |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 승계 및 발명 출원 여부 3. 직무발명 규정의 개폐 4. 우수발명의 발굴 및 지원 5. 발명의 유지 및 소멸 여부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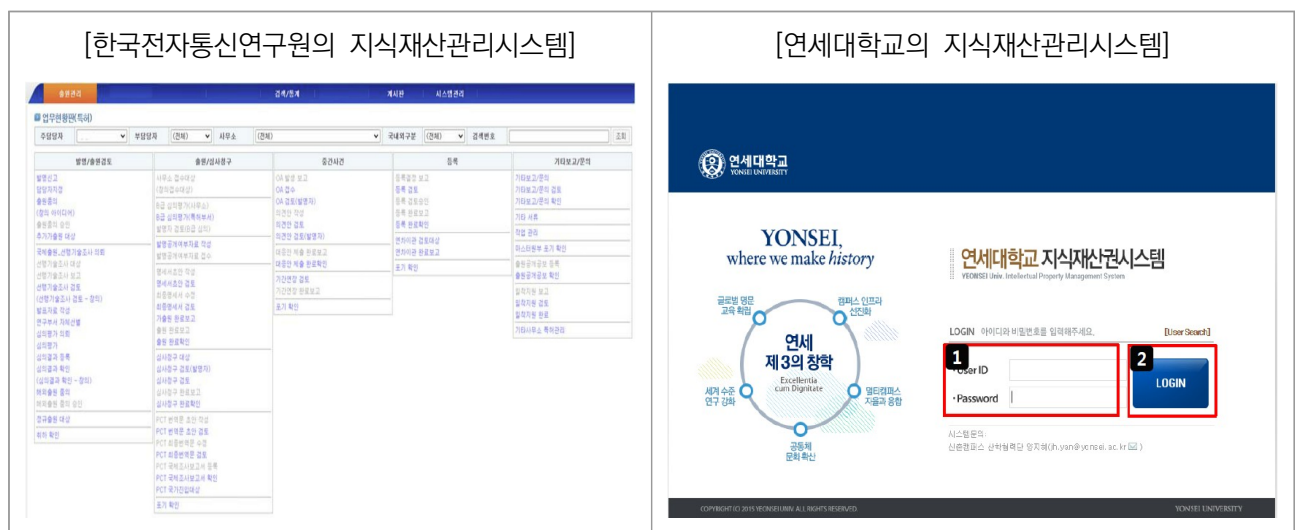
4 지식재산 현황 관리 시스템

4.1. 개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용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보관 및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창출, 관리, 활용·확산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지식재산 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보유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 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을 기반으로 혁신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상세한 내용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4.2. 관리 시스템

-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현황에 대한 관리대장은 지식재산권의 직무발명부터 출원 및 등록, 양도, 포기 등의 추진절차를 반영하는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다만, 관리대상 성과가 많지 않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IP 관리대장을 수기 및 엑셀파일 등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고 등을 위해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구축·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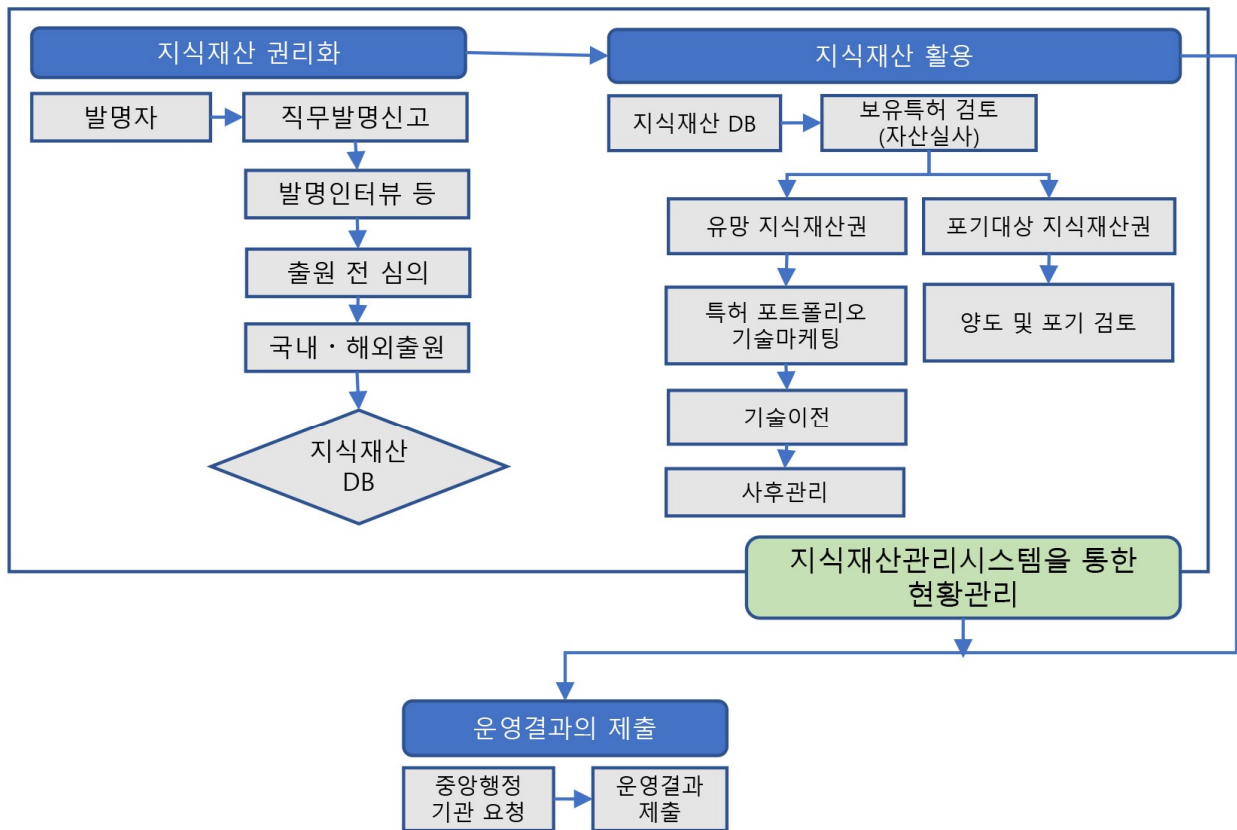


[그림]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운영 사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III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 주요 내용

1 목적

-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 주요 내용에서는 직무발명부터 출원 전 심의,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 등에 대해 관련된 법 조항 및 절차를 예시 등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관리를 위한 운영 규정의 제·개정 및 관리 운영 시 참고할 수 있음
- 본 안내서에서 언급되어진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활용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정보 등을 참고하고, 각 연구개발기관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 또한, [부록3]에 제시된 지식재산권 운영 규정 사례 등을 참고하여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그림]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주요 절차(예시)

2 직무발명신고

직무발명신고는 특허관리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등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결과에 대해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에 자신의 발명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임

※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연구자 등 발명자의 발명 신고 의무

-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 등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완성 사실을 사용자인 연구개발 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2조)
 - 사용자등이 내부적으로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종업원등의 직무 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지체없이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발명자의 발명 완성 사실을 통지받고 그에 대한 승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연구자 등은 문서(이메일이나 전자문서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포함)로 발명의 완성 사실을 알려야 함
- 발명신고의 기재 사항
 - 발명의 신고는 발명을 완성한 연구자가 그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에 발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발명신고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재 해야 함([붙임-1] 참조)

- 발명자
- 국가연구개발 과제명, 과제번호 및 중앙행정기관 등 정보
- 발명의 종류 및 명칭
- 발명 사실의 신고 및 양도 의사의 표시

■ 사용자의 승계 통지 의무

- 문서에 의한 승계 여부 통지(발명진흥법 제13조)
 - 연구자의 발명완성 사실 통지를 받은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은 그 권리의 승계 여부를 연구자에게 문서로 알려주어야 함

- 연구자의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를 받은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³⁾ 이내에 그 승계 여부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⁴⁾
-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사전예약승계규정⁵⁾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음
- 승계 통지의 효력(발명진흥법 제10조)
 -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이 승계 통지를 하면 바로 권리가 승계되나, 사용자가 기한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동의없이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연구자가 그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만을 확보하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미리 예약승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가질 수 없도록 함(대기업의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둘 것을 강제하기 위한 취지)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3)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 4) 실무에서는 직무발명 신고의무와 사용자 승계에 있어서 사전에 직원 고용계약(또는 교원 임용계약 등)시 관련 내용이 고용 계약서 등에 포함하고 있으며, 발명의 신고와 함께 발명자인 연구자로 하여금 발명의 양도증을 제출하도록 하여 권리 귀속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5) 「사전예약승계 규정」이란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는 경우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 간 약정등을 체결하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는 것
 (<http://www.kipa.org/ip-job/method/method03.jsp>)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 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 **개인명의 특허 출원 및 관리**⁶⁾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명으로 출원·등록된 정부 R&D 특허성과는 규정위반 행위이며, 연구성과의 부적법한 관리 및 활용 행위로 간주
 - (발생원인) 정부 R&D 특허성과 소유권과 관련한 연구자의 인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기관 및 직원 간의 권리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경우
 - (대책) 연구자가 재직 중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관리부서 등 연구개발기관에 개인명의 발명을 신고하고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에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활용하여 직무발명 여부에 따른 개인명의 특허출원 승인 여부를 결정
-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 출원의 부적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시 아래 부적절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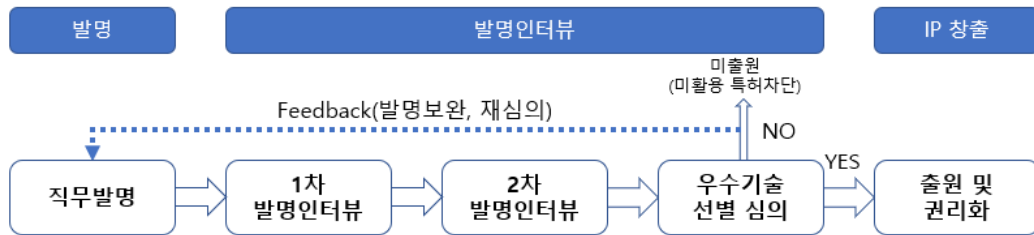
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1, 2021년 정부 R&D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가이드북

〈표〉 개인명의 특허 출원의 부적절 사례(예시)

| 구분 | 유형 | 사유 |
|-----|--|---|
| 사례1 | 직무발명승계 직무규정(또는 계약)이 있고 그 규정(또는 계약)에 공동명의 출원 관련 사항이 있으나, 발명자(직원)가 개인명으로 출원 | 해당 직원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연구기관과 직원 개인의 공동명으로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것만이 해당 기관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특허성과를 단독 개인명의 또는 개인 간 공동명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것은 부적법함 |
| 사례2 | 직무발명규정(또는 약정)이 있으나 그 규정(또는 약정)에 공동명의 출원 관련 사항이 없고 특허성과의 발명자(직원)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 | 과제의 연구개발 계획서에 참여연구원으로 기재된 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과제의 결과로 개발한 특허성과는 직무발명에 해당됨. 직원의 직무발명은 해당 직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이에 대한 직무발명규정(또는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허성과는 연구기관에 승계되어야 하며, 정부 R&D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소유가 원칙임 |
| 사례3 | 타 기관 소속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에 참여하고, 연구기관과 개인 사이에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게 승계(또는 양도)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나 개인명으로 출원하는 경우 | 개인과 연구기관 사이에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이 있고, 타 기관이 이에 동의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특허성과에 대한 개인의 지분은 연구기관에게 승계(또는 귀속)되며, 연구기관이 단독명으로 특허 출원 또는 등록할 수 있음 |
| 사례4 | 타 기관 소속 직원이 개인 자격으로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에 참여하고, 연구기관과 개인 사이에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에게 승계(또는 양도)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며, 타 기관의 직무발명규정(또는 약정)이 있고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성과를 개인명으로 출원하는 경우 | 개인이 타 기관의 직원으로서 연구기관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타 기관의 직무발명규정(또는 계약)이 있는 경우 특허성과는 타 기관에 승계되어야 함 |
| 사례5 | 타 기관 소속 직원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연구기관과 타 기관 소속 개인 사이에 특허성과를 연구기관으로 승계(또는 양도)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도 없고, 특허 발생에 기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 특허는 발명자에게 원시귀속되는 바, 연구개발협약등을 체결하지 않았고 달리 해당 특허의 발생에 기여한 바도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3 발명 인터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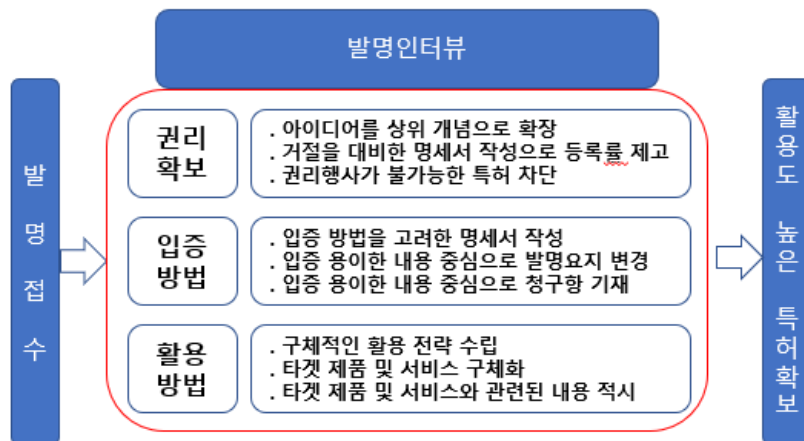
출원 전 발명 인터뷰 등을 통해 발명의 권리획득 가능성을 높이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우수 특허를 사전에 선별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 출원을 방지할 수 있음



[그림] 우수특허 발굴을 위한 발명인터뷰 활용 사례(한국특허전략개발원)

■ 발명 인터뷰 등을 통한 우수특허 발굴

-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발명신고서를 접수한 후,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 인터뷰 등을 통해 발명을 보완하거나 승계여부를 결정
 - (선행기술조사) 발명의 특허등록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기술과 발명신고서 내용을 비교하여 특허 등록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
 - 해당 연구분야의 기술동향, 경쟁사 및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 유사한 종래 기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 분석 등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특허성 여부 판단 및 발명의 권리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고, 침해가능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특허분쟁시 사전 자료 확보 등 권리 유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발명 인터뷰) 출원 전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 인터뷰를 통해 특허의 질적 보완 및 특허 활용 전략 등 구체화가 가능



[그림] 발명 인터뷰의 활용(예시)

- (연구자 밀착 지원) 연구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파급력 높은 고품질 특허 창출에 따른 특허 등록료 제고 및 특허관리비용 절감

〈표〉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연구자 밀착 지원(사례)

| 지원유형 | 지원 내용 |
|--------------|--|
| 과제 중심 지원 | 과제 기획/중간/종료 전 단계 특허창출 전략 수립 및 지원 등 |
| 기술이전 중심 지원 | 연구개발기관 소유 우수기술*로서 대형기술이전 가능한 기술 혹은 S등급 이상 기술을 대상으로 해외출원을 위한 강한 특허 설계 지원 등 * ① 경쟁기술 대비 기술적 우월성(Break-through)이 명확하고 ② 기술의 적용 분야(application)가 명확하며 ③ 글로벌 경쟁기업(Target Company)의 객관적 적용 가능성 충족 |
| 논문 수월성 중심 지원 | 수월성지표* 이상 논문 중 지재권 권리화 누락 건 점검 및 우수성과의 질적권리 강화지원 등 * NSC 본지, JCR2%이내, IF20이상, 분야 1위 |

※ ○○연구원 사업 공고문으로부터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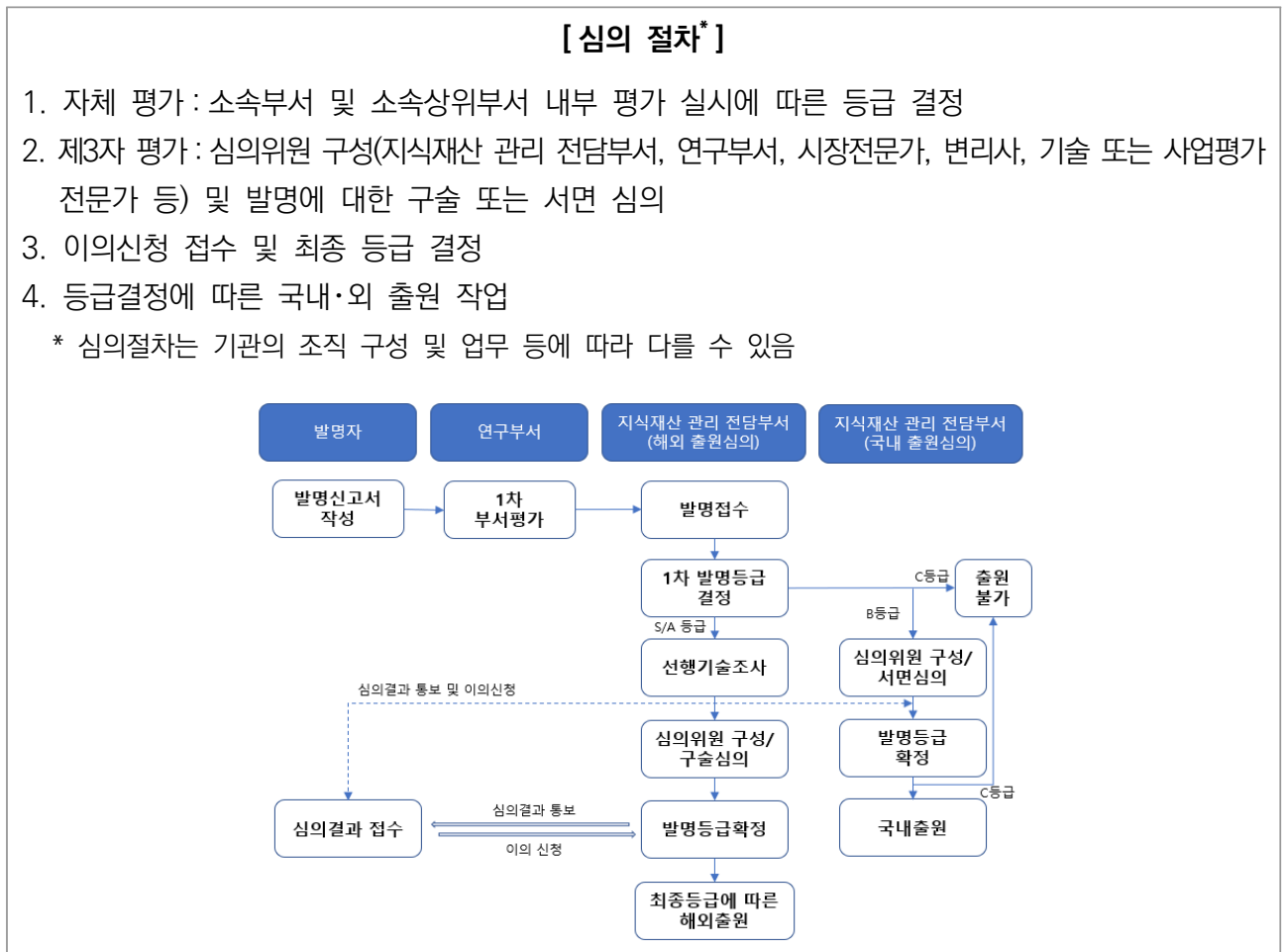
4 출원 전 심의

지식재산의 출원 전 심의는 보유한 지식재산의 국내·외 출원 등 의사 결정 단계로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필수 단계임

출원 전 심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가치 극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출원 전 심의 과정

1. 기술 분석 및 검토 : 접수된 발명에 대해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분석 및 평가. 기술의 혁신성, 기술적인 난이도, 경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평가
2. 특허성 및 기술의 상업적 가치 등 평가 : 유사 특허 존재 여부 및 기술의 상업적 가치 등을 평가하고, 전문 변호사나 특허 대리인과 협력하여 출원 가능성 확인
3. 출원 전략 수립 : 출원 전 심의를 통해 특허 출원의 범위, 국가 선택, 우선권 및 출원 방식을 포함한 의사결정



[그림] 국내·외 출원심의 절차도(예시)

- 출원 전 심의에서는 발명평가 항목 등을 토대로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연구자의 출원목적, 기술이전가능성, 해당기술 시장동향 등을 고려하여 직무발명에 대해 심의하고 평가하여, 등급에 따른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전략 수립 가능

〈표〉 발명평가 항목(예시)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
| 권리/기술성 | 1. 기술완성도 | 평가대상 특허기술의 개발 상태에 대한 단계 평가 |
| | 2. 기술속성 | 기본발명 또는 개량발명 여부 |
| | 3. 기술동향과의 부합성 | 해당 기술이 포함된 기술군의 발전 방향 등 동향과의 부합성 |
| | 4. 기술수명주기 | 평가 대상 특허기술의 향후 활용도 |
| | 5. 권리 강도 | 타인에 의한 회피설계 가능성 |
| 시장성 | 1. 상용화가능성 | 상용화 가능성 |
| | 2. 산업적파급효과 | 적용 가능한 시장 및 제품의 형태 |
| | 3. 시장의 성장성 | 적용 제품시장의 성장 추이 |
| | 4. 기술수요 가능성 | 평가대상 특허기술의 시장 수요 |
| | 5. 시장진입 용이성 | 시장 진입 시 제도, 규제등 외부장벽 또는 장려 요인 존재 가능성 |

〈표〉 등급별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전략(예시)

| 등급 | 기술이전 가능성 | 출원전략 | 기술이전전략 |
|----|----------|--|---|
| S | 1순위 | 국내 : 출원/등록비 지원 해외 : PCT 및 3개국 출원/등록비 지원 권리유지 : 4년차부터 평가 후 지원 | 최우선적 기술이전 추진 (마케팅보고서, 수요기업조사, 가치평가 지원) |
| A | 2순위 | 국내 : 출원/등록비 지원 해외 : PCT 출원 지원 권리유지 : 4년차부터 평가 후 지원 | 우선적 기술이전 추진 (마케팅보고서, 수요기업조사, 가치평가 지원) |
| B | 3순위 | 국내 : 출원/등록비 지원 해외 : 지원없음 권리유지 : 4년차부터 평가 후 지원 | 적극적 기술이전 추진 (수요기업조사, 특허포트폴리오구축) |
| C | 4순위 | 국내 : 출원/등록비 지원 해외 : 지원없음 권리유지 : 지원없음 | 소극적 기술이전 추진 (저가로 기술이전, 최소수준의 특허지원) |
| F | 낮음 | 지원하지 않음 | 비용절감 실현 |

5 지식재산의 권리화

5.1. 특허출원서 작성 및 심사청구

■ 특허출원서 작성

- 발명 신고 단계 이전부터 연구 목적의 보고서 작성 및 특허출원 등의 권리화 작업을 위한 문서 등의 기초 작업은 연구의 질 향상과 권리화에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음
- 사용자인 연구개발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결정한 경우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위하여 제출할 특허출원서를 작성
 - 연구개발 성과물의 특허를 보호받기 위한 권리화 작업시 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발명자인 연구자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음
- 특허출원서, 「특허출원서」가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특허출원서에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 등이 첨부되어야 함(특허법 제42조)
 - 특허 출원서 기재 내용 :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및 지원기관 등이 특허 출원서 등에 명시되어야 함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지원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 특허출원의 심사 청구(특허법 제59조)

-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의 소재지)
 -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 청구에 의한 특허출원 심사의 진행
 -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특허출원 심사에 의하여 결정되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청구가 없으면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심사청구기간 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특허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봄

■ 전략적 심사 청구

- 특허출원 시 해당 시장의 성숙 여부, 조기 등록에 따른 특허유지비용 증가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발명등급 및 특허활용 여부와 연계한 선택적 심사청구 등 전략적 접근을 고려할 수 있음
 - 발명 등급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특허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제출하고, 선별적·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특허의 품질 제고에 따른 권리 강화
 - 일반 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무(無)심사청구 원칙을 적용하고, 무심사청구 기간 동안에 시장성숙, 기술이전, 특허 라이선싱 등의 특허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후 필요시 즉시 심사청구 진행
 - 심사청구 유예기간(출원 후 3년 경과)이 경과할 때까지 시장 미성숙,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는 일반특허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미제출에 의한 특허비용 절감 및 특허관리 효율성 제고

5.2. 특허의 등록

■ 등록결정과 통지

- 심사를 거쳐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 거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결정하며, 특허청장은 특허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

■ 특허권의 등록 유지

- 특허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특허법 제88조)
-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이 필요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가능(특허법 제89조~제92조)
-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특허법 제92조의2~제93조)
-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이 대상이 되는 발명은 특허법 시행령 7조에서는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목허가가 필요한 발명,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발명으로 한정
- 특허 등록료는 특허법 제79조 등에 따라 등록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3년차를 납부하고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나가기 전에 그 다음 해부터의 1년분씩, 수년 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납부할 수 있으며,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음

6 지식재산의 활용

지식재산의 활용은 보유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자산실사를 실시하여 사업성이 높은 지식재산을 식별하고, 기술이전 또는 직접실시를 통해 기술이나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타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타 기관이 실시하게 되는 경우는 타 기관에 실시권을 허락하여 제3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지식재산권 자체를 타 기관에 양도하여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타 기관이 실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그림] 지식재산권의 실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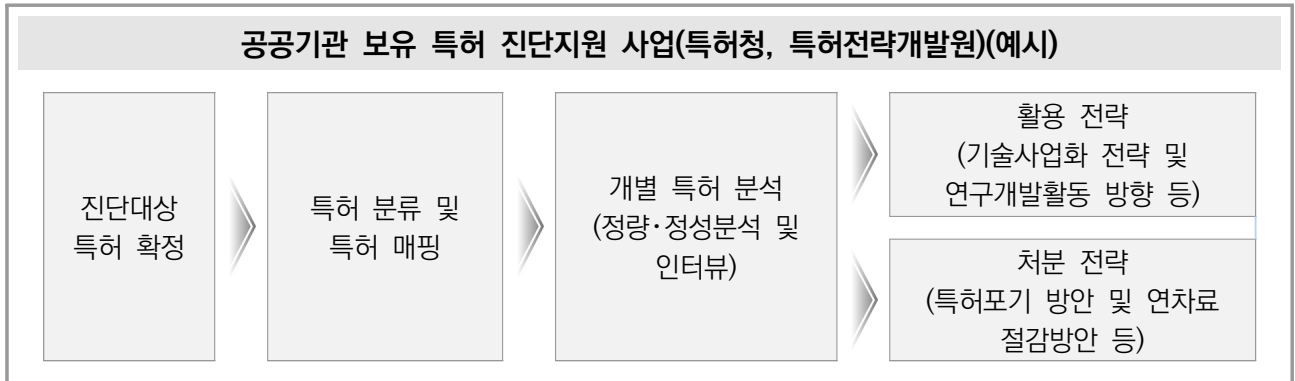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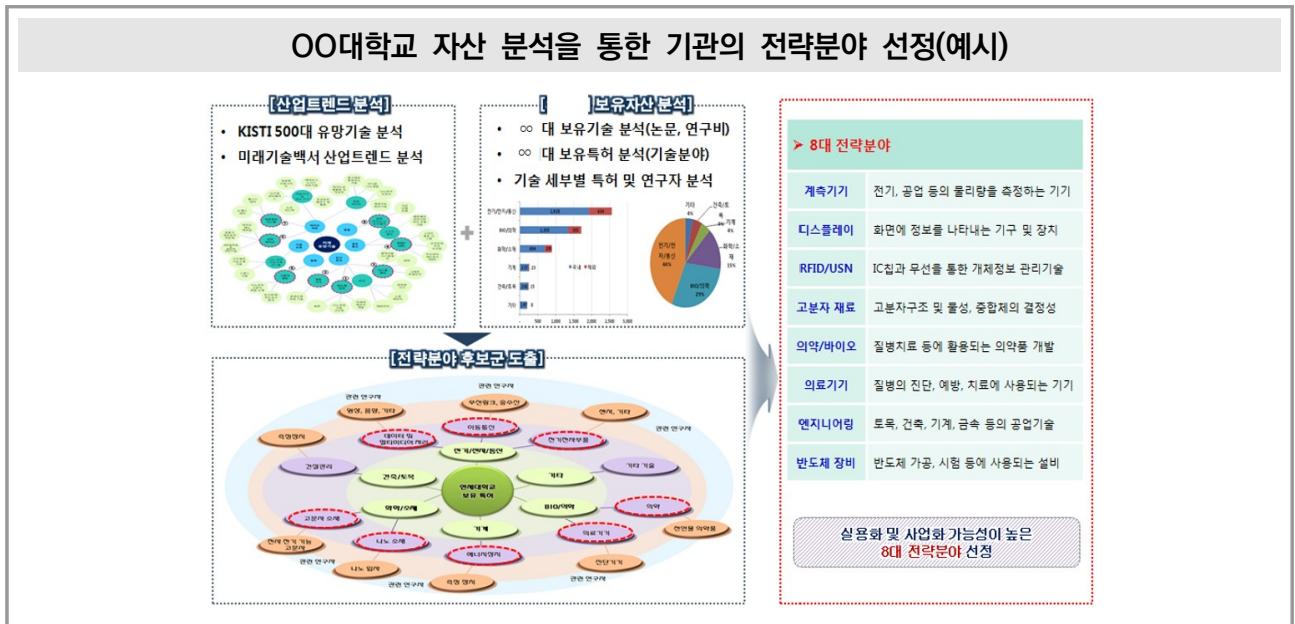
6.1. 자산실사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업성이 유망한 특허자산을 확인하여 관리의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창출 확대를 위해 상품가치가 높은 특허자산을 도출하거나,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추출하는 등 주기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산 실사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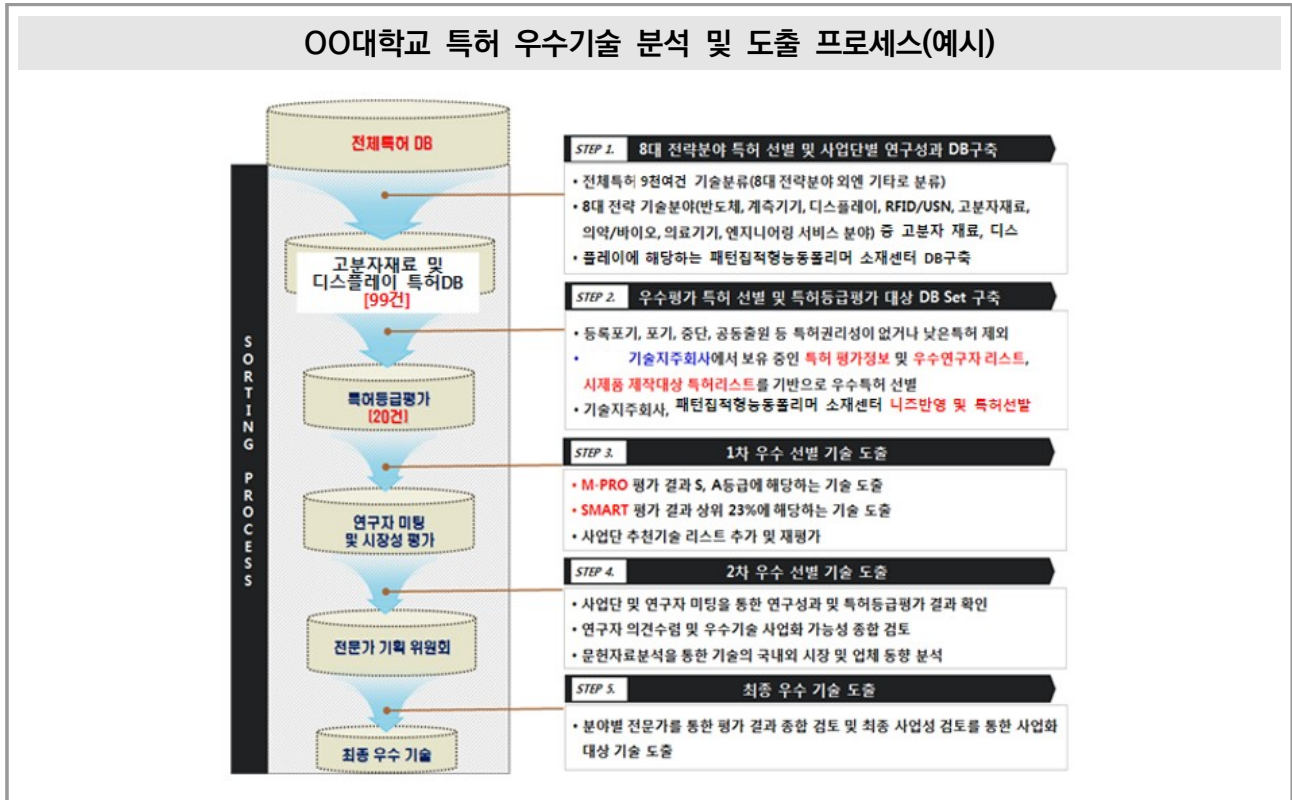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테크트리 등을 구축하여 특허확보 및 미확보 기술분야를 파악하고, 보유특허에 대한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유망 특허의 활용 및 미활용 특허의 포기 전략 등을 수립

- 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제품·기술분야별 세부분류, 정량·정성분석, 활용 및 처분전략 등의 절차를 통해 연구기관 보유 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음
- (특허분류) 상향식 방법으로 특허명세서, IPC, 연구과제 정보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한 제품/서비스 단위 그룹화하거나, 하향식 방식으로 기술로드맵 등의 기술분류 정보 등에 매핑하여 Tech-Tree를 구축하고 특허 확보 기술분야 및 미확보 기술분야 등 파악



- (특허분석) 기술성·권리성·시장성 관점의 정량·정성분석 및 특허의 대내·외 환경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 수행 등을 통한 보유특허 진단



- (활용전략) 유망 특허를 도출하거나 기술이전을 위해 활용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미활용 특허에 대한 포기처분 등으로 연차료 절감에 활용 가능

|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지원 사업(특허청, 특허전략개발원)(예시) | | | |
|--------------------------------------|---|---|---|
| | 특허 분류 | 특허 분석 | 활용 전략 제시 |
| 활용 니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보유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 특허의 제품·기술분야별 세부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특허 분석을 통한 보유 특허 진단 및 연구자 인터뷰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관점의 정량·정성 분석 • 특허의 대내외 환경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분석·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선별된 대상 특허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활용전략 제시[예시] ① 기술소개서, 마케팅 자료 작성을 통한 기술 사업화 전략 제시 ② 기술 수요 기업군 정보 제공 및 추가 R&D 방향 제시 |
| 처분 니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보유특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상 특허의 제품·기술분야별 세부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특허 분석을 통한 보유특허 진단 및 연구자 인터뷰 • 기술성·권리성·시장성 관점의 정량·정성 분석 • 특허의 대내외 환경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자 인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분석·연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선별된 대상 특허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처분전략 제시[예시] ① 포기후보특허의 등급 분류를 통한 처분 방안 (일정기간 유지 후 재심의, 청구항 다이어트 후 유지, 포기 등) 제시 ② 특허별 개별 평가표 및 연차료 절감(안) 제시 |

6.2. 기술실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하는 등 기술이전활동을 수행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망기술의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마케팅,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 사후관리 등의 활동이 이루어짐
 - 기술이전은 특허권의 양도, 실시권 허락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하우 이전, 기술자문 및 지도 등을 포함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실질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우선적으로 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6.2.1. 유망기술 발굴 및 IP포트폴리오 구축

■ 유망기술 발굴

- 일반적으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 발굴, 외부전문가 제안, 발명자 제안, 기술거래기관 활용, 수요기업의 요청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됨

■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 파급력이 높은 고품질 특허 창출 및 대형기술이전 성과 도출을 위한 IP포트폴리오의 질적 수준 제고
 -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① 핵심, 표준 특허와 미래유망혁신기술의 조합, ② 시장/제품/기술과 지식재산권과의 조합, ③ 공격과 방어의 조합, ④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등이 있음⁷⁾

IP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예시)

[공백기술 도출을 통한 IP포트폴리오 구축]

- 현재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필요한 공백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특허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강]

- 보유 자산 기술의 범위와 침해품 권리의 비교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강
- 관련분야의 주요 특허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강

■ IP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

- IP포트폴리오 구축은 우수특허 중심 출원·등록 등 특허의 질적 가치 제고와 동시에 수요자 중심의 특허 관리를 통해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대형 기술이전 성과 창출에 기여

〈표〉 IP 포트폴리오 구축 프로세스(예시)

| 패키지 구축 프로세스 | | 내용 |
|-------------|---------------------------|--|
| 1단계 | 기관 보유특허 검색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서별로 출원, 등록된 특허 검색 • 동 연구자의 미공개건 특허 고려 • 내/외부 전문가 활용 특허등급평가 |
| 2단계 | 기술주도 기반/ 수요주도 기반 기술 매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주도 기반형 : 핵심기술을 선별하여 기술별 수요기업을 매칭 • 수요주도 기반형 : 기업수요에 따른 기술 매칭 |
| 3단계 | 기술군별 포트폴리오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질환별 기술패키지 • 기존에 선별되어 있는 사업화 유망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추가 • 정부정책방향과 부합되는 기술군에 대한 특허 패키지 |

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 지침서, p.120

6.2.2. 기술이전 마케팅

■ 기술도입자 탐색 활동

- 이전 대상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등 제3자를 대상으로 기술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기술도입자 탐색과정에 착수하게 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 수요조사, 온·오프라인 기술설명회, 홈페이지 업로드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 방법을 통하여 기술도입자가 필요로 하는 이전 대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에서 이전 기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NTB(기술은행) 사이트(ntb.kr)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서 생산된 이전 기술을 총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성과가 이전되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기법을 활용

- 연구자 또는 기술이전조직에서 잠재 기술도입자를 직접 접촉하는 등의 대면 접촉 방법, 웹사이트 이용, 팩스나 전화 이용, 전시회를 통한 판매 촉진 등

〈표〉 기술 마케팅 방법(예시)

| 마케팅 방법 | 주요 활동 |
|----------------|---|
| 직접적 접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 특허매입 담당자 등 직접적 접촉을 통해 보유기술의 우수성 등을 홍보 • 수요기업을 타케팅한 직접적 마케팅 |
| 기술중개기관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야별 특화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술중개기관 활용 • 기술중개기관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제고 |
| 기술설명회/박람회 등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설명회,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가하여 보유기술 소개 및 기술 마케팅 수행 |

- 기술이전 마케팅 협력 기관으로는 NTB 기술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공동TLO 마케팅사무국, (사)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 등 다양한 외부 기관이 활용되어질 수 있음

6.2.3. 기술이전 계약체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로 획득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 등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과 실시·양도하는 계약

■ 기술실시계약은 사전협의, 계약검토, 계약체결 순으로 이루어짐

- 사전협의 : 기술이전계약체결 전에 발명자 등 연구자와 협의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수행
 - 기술이전의 상대방이 결정되면 기술 활용 가능성, 기술료, 조건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가 심층 협의하고 분쟁을 대비하여 그 내용을 상호 보관할 것을 권장
 - * 기술료의 경우, 책정 방법을 표준화하거나 기술가치평가 방법 등 기술보유자가 속한 기관의 상황에 맞춰 기술도입자와 협의
 -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사전에 표준화된 기술이전계약서를 보유하여 기술도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협의 시간 단축 등 효율화 필요
 - * 필요시 기술보유자와 기술도입자는 기술이전계약 전 MOU나 NDA 등을 활용하여 기술이전계약 사전 협의
- 계약검토 및 계약체결 준비 : 기술도입자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 기술이전 조건 등을 종합 검토 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절차를 준수하여 기술이전을 신청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절차에 따라 기술도입자의 기술 활용 및 상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 계약 체결 준비
- 계약체결 : 기술이전계약 체결 준비가 마무리 되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계약의 일반사항, 공통사항 등을 체크하고 기술도입자와 최종 협의 후 기술이전계약서에 양자 서명 날인
 - * 일반사항 체크 : 당사자, 계약대상물, 기간, 기술료(부가세 여부 포함), 날인·서명 형태 등
 - * 공통사항 체크 : 계약서 각 조항, 특수 조건 등

〈표〉 기술이전 절차(예시)

| 절차 구분 | 활동 | 주요내용 |
|---------------|----------------------------|--|
| 기술공지 | 홈페이지 기술공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특허 중심 연구자 대상기술 설명자료 작성 • 기술이전조직 담당자 대상기술 설명서 대외 공지 |
| 기술이전추진 요청서 제출 | 수요업체 접수 후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기업의 기술이전요청 접수 • 기술이전책임자/수요기업담당자 서류 작성 |
| 기술이전검토 (변리사) | 변리사 계약조건 협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리사의 수요기업과의 계약조건 협의 |
| 기술이전검토 | 사업화 역량 평가 업체현장방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역량평가를 위한 기업현장 방문 및 질의응답실시 |
| 사전검토 위원회 | 기술이전 문제성, 상용화 가능성, 최종조건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가치평가액 및 기술이전/상용화 가능성 검토 • 기술이전 세부조건 등 검토 |
| 기술이전 심의위원회 | 안건 상정/심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토 등 종합검토를 통한 기술이전 추진여부 심의 |
| 계약서 세부협의 | 심의의견 반영 세부협의 (변리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의견 반영 계약조건 협의 |
| 계약체결 및 통보 | 계약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

■ 기술실시계약의 구성은 본문, 전문 및 비밀유지조항 등을 포함함

- [부록4] 제시된 기술이전 계약서 표준(안)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기술실시계약서를 구성할 수 있음

기술실시계약의 구성과 주요사항(예시)

- 1) 서문 : 표제와 전문
- 2) 본문 : 정의조항, 실시허락조항, 실시료조항, 특약사항, 실시기간과 해지, 일반조항
- 3) 전문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계약 전반에 대한 의사해석의 기준
- 4) 정의 조항 : 기술료의대상인 기술과 제품의 정확한 정의 필요
- 5) 개량발명조항
- 6) 특허보증관련 조항
- 7) 비밀유지의무조항

6.2.4.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정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 기술료 징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후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사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

- 기업 등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우선적으로 기술료의 일부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부를 납부하고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및 운영경비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그 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제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6.2.5. 기술이전 사후 관리

■ 기술 이전 계약에서 정한 대로 계약 조건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함

- 기술이전 사후 관리에서는 대부분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원만한 계약 종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의 사후관리가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음
- 그러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 촉구, 채무 변제 및 계약 해지 등 일련의 법적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사후 관리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6.3. 양도 및 포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 계약의 미체결 및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포기를 검토할 수 있음

6.3.1. 지식재산권 포기 적용 대상

-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성과에서 발생한 지식재산권의 포기 대상은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
- 출원하기 이전의 단계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의 포기대상이 아님
 - 직무발명 등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포기는 혁신법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따름
- 공동명의로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포기 대상이 됨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가능. 단 실시기간의 종료와 추가 실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 포기 가능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부터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지식재산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가 실시되는 등 이미 활용된 점, 포기는 혁신법 상의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 부과되는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포기대상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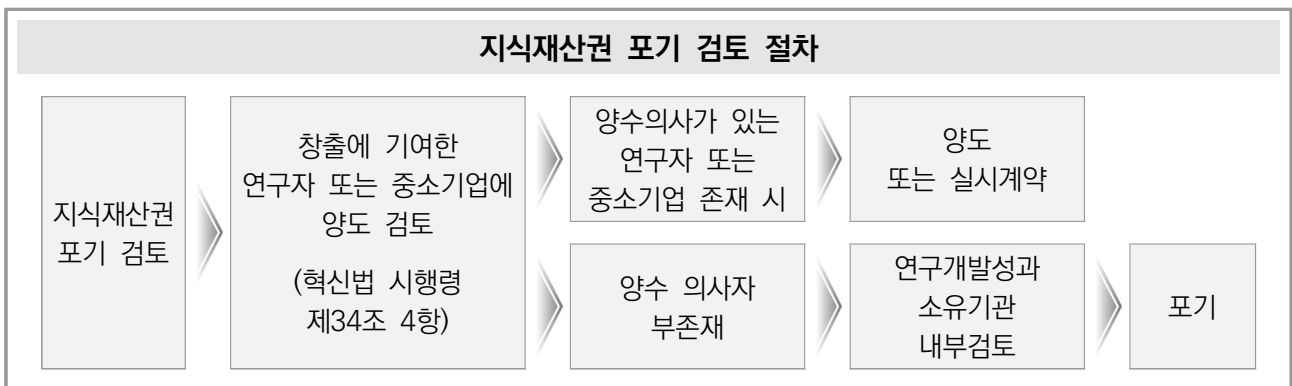
6.3.2 지식재산권 포기 전 양도 검토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기 이전에 양도를 검토하여야 함([붙임-2] 참조)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 공동명의로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공유한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모두 해당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한 경우,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연구기관이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를 포기하더라도 공유자인 주관연구기관이 유지하는 경우는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 전용·통상실시권이 설정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포기 가능(특허법 제1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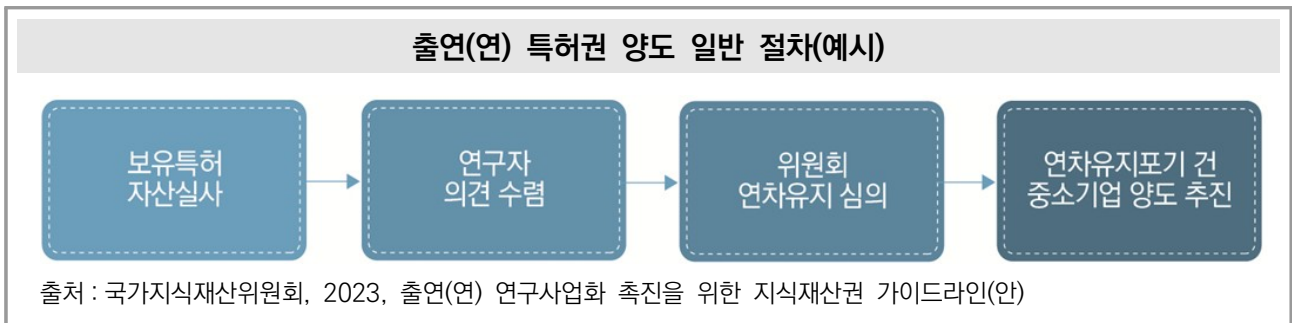
- 포기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해 양수의사가 있는 연구자나 중소기업이 존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약 또는 양도계약을 체결



6.3.3 지식재산권 양도

- 권리자가 특허권에 대하여 양도증서를 작성하고 해당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절차
 - 양도 계약서의 작성
 - 지식재산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의 경우는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 등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하여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양도 계약서의 관리
 - 지식재산권은 통상의 양도 계약서와 달리 정기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경우가 존재하므로, 통상의 양도 계약서와 동일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임대차 계약 등의 지속적인 거래에 관한 계약 서류와 같은 관리 필요

- 통상 출연(연)의 특허 양도는 보유특허에 대한 권리 지속 여부 등을 검토하고, 특허권 포기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부 위원회를 통해 포기·양도하는 절차로 진행됨



-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을 완성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양도받을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 하려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6.3.4 지식재산권 포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의 [붙임2]의 포기 점검항목 등을 참고하여 포기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포기토록 함
 -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등록특허나 기술이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등록특허, 사업성이 부족하여 권리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록특허 등이 포기 대상이 될 수 있음
 - 또한, 공동권리자가 소유권의 유지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나 공동권리자의 폐업·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됨
- 지식재산권 포기 관련 규정을 별도 규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기존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포함하여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OO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예시)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까지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논의 중이거나 기술이전 계약기간 중인 경우
~ 중략 ~
9. 해당 특허와 관련된 타국가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타국 특허출원이 심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의 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할 수 있다.

IV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운영 결과의 제출

1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 연구개발기관은 지식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며, 지식재산 전략을 개선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함
 - 지식재산의 법적 문제 등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유효성을 유지하며, 지식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의 제정 및 운영이 중요함
 - 지식재산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는 특허 검색, 기술 분석 및 경쟁 분석 등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축적된 지식재산의 상호 공유를 통해 조직 내 협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요한 지식재산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음

2 운영결과의 제출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 시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지식재산권의 창출-관리-활용·확산의 프로세스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 지식재산의 관리에 따른 운영 결과를 상시 수집하고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표〉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운영 결과 보고 주요 항목 (예시, 부록 5)

| 구분 | 주요 보고문항 항목 구성 |
|---------|--|
| 조직규모 | • 지식재산전담조직의 인력 현황 |
| 연구개발성과 | • 발명신고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 지식재산 등 기술실시 현황(직접실시, 기술이전, 양도 등) • 지식재산 등 포기 현황 • 기술료 수입 및 사용 현황 |
| 지식재산 활동 | • 출원 전 심의 여부 • 포트폴리오 구축 활동 여부 • 자산 실사와 활용 등 • 지식재산 출원·심사·유지 비용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제5항의 운영규정에 따른 운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3,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2018, 지식재산 거래업무 매뉴얼
- 특허청, 2017, 스타트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매뉴얼
- 특허청·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7, 대학,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전략 매뉴얼
- 지식재산연구소, 2006,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매뉴얼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8, 출연(연) IP경영전략 매뉴얼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대학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슬기로운 이해관계 조정 안내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1, 연구자를 위한 알기 쉬운 지식재산 활용지침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1, 2021년 정부R&D 개인명의 특허성과 관리 가이드북
- 산업통상자원부, 2021, 기술평가 실무가이드

붙임-2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점검항목 (예시)

1. 지식재산권의 포기 연구개발과제

| | | | |
|---------------|--|---------|----------------|
| 발명의 명칭 | | | |
| 등록권자 | | | 발명자 |
| 등록 국가 | | 등록일 | 등록번호 |
| 과제고유번호 (NTIS) | | 중앙부처명 | 관리기관명 (전문기관 등) |
| 연구사업명 (기여율) | | 주관연구기관명 | |
| 연구과제명 (기여율) | | | 연구기간 |

2. 지식재산권의 포기 연구개발과제 점검항목

| 구분 | 점검항목(체크 리스트) | 해당 여부 (√ 표시) | |
|----|---|--------------|-----|
| 1 | •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낮아서 향후에도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 예 | 아니오 |
| 2 | • 포기하더라도 국내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지식재산권 | 예 | 아니오 |
| 3 | • 법령과 연구과제협약서 등에 의해 포기의 제한이 없는 지식재산권 | 예 | 아니오 |
| 4 | • 제3자에 대한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 예 | 아니오 |
| 5 | • 기술수명주기(Life Cycle)가 쇠퇴되었거나 낙후된 지식재산권 * ex) 특허의 등록 이후 3년 이상 경과된 특허 건을 양도·포기가 가능한 특허로 분류(최초 등록시점 기준으로 3년 경과 이후에는 기술이전율이 현저히 급감함을 고려) | 예 | 아니오 |
| 6 | •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이 양도 의사가 없음 | 예 | 아니오 |
| 7 | •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 모두가 포기를 동의한 지식재산권 | 예 | 아니오 |
| 8 | • (해당 시에만 체크) 공동권리자가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지식재산권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예 | 아니오 |

붙임-3

지식재산 관리 운영규정 (사례)

1. 연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교직원의 학술연구활동을 진작하고, 연구결과를 산업발전에 직접 기여하게 하며, 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에 적용한다.

②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의료원이 별도의 규정 적용 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 등”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발명 등”이라 함은 발명, 고안,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영업비밀 기타의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직무발명 등”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연세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루어진 연구(이하 ‘외부지원연구’라 한다), 학교가 자금을 제공하거나 기타 지원을 하여 이루어진 연구 또는 학교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연구와 관련하여 교직원 등이 행한 발명 및 기타 지식재산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Know-how를 비롯하여 기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
5. “출원 등”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록출원 기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을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의 실시”라 함은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으로 발명 등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양으로 발명 등을 사용·수익하는 것도 포함한다.
7. “기술료”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이후 입금되는 정액 기술료,경상 기술료,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기술이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수익금을 말한다.
8. “제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학교 또는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 관련 지식재산권의 출원, 유지 또는 처분을 위해 지출한 비용
 - 나. 외부기관과의 공동 소유 지분 등을 위한 비용
 - 다. 기술이전을 위해 지출한 중개 수수료
9. “순수익”이라 함은 제7호의 기술료에서 제8호의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기술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업무담당기관

제3조 (사무관장)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제3조의2 (권리 승계) 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한다. 또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이 위임받아 관리한다.

제4조 (지식재산권심의회위원회 설치) ①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

가.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것

나. 직무발명 등의 권리의 귀속에 관한 것

다. 직무발명 등의 기술적 평가에 관한 것

라. 직무발명 등의 출원 및 비용 등에 관한 것, 해외출원 등의 경우도 포함한다.

마. 공동발명자의 지분비율에 관한 것

바. 지식재산권 실시에 관한 것

사. 지식재산권 유지에 관한 것

아. 보상금에 관한 것

2.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것

3.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산학협력부단장 위원장 당연직

2. 상경대학, 경영대학, 이과대학, 생명시스템대학, 공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생활과학대학, 약학대학 소속 교수 중 각 1인

5. 위원장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단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별로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를 산학협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지식재산권재심위원회)

제6조 (심의방법) ① 위원회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위원 외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 소속 위원 중 심의의 대상이 된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3장 직무발명 등의 신고와 권리의 귀속 등

제7조 (신고 등) ①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 등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또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특허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직무발명 등에 관한 해당 교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 등을 공표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발표, 논문게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직무발명 등의 심사 등) ① 전조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직무발명의 해당 여부와 승계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교직원 등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발명의 권리의 승계 여부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직원 등에게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의 신청) ①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조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한다.

② 전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 신청의 당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그 결정내용을 당해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외부지원연구에 관한 신고 등) ① 교직원 등이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외부지원발명 등의 권리귀속,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을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교직원 등과 산학협력단은 당해 연구과제 수행결과 등에 관하여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직무발명 등에 관한 권리 승계)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에게 보상을 하고 직무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승계하여 이를 소유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은 양도증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승계시점 등) ① 산학협력단장이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산학협력단장이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 (임의양도) ① 교직원 등의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직원 등이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교직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양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교직원 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양수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 학교의 기획하에 학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학교 명의로 공표되는 저작물(이하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14조 (업무상저작물 이외의 저작권) 학교가 연구를 지원하고 그 연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취득한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 지분의 3분의 1을 산학협력단에 귀속한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이 저작물에 지원한 경비를 초과하는 때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지분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 (교직원 등의 출원 등의 제한) 직무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출원 등을 하거나 직무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직무발명 등의 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승계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교직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전항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출원 등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이 직접 출원 등을 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반환할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반환받은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은 당해 지식재산권의 실시상황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원 등의 비용) ① 산학협력단이 제11조,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발명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 출원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을 승계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필요한 때 산학협력단의 심사를 통해 당해 지식재산권을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지식재산권을 해당 교직원 등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4장 지식재산권의 실시 등

제19조 (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실시권 설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협력단은 당해 발명자 등의 협조를 받아 실용화 가능성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당해 발명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 사업 관련 법령이 기술 등의 실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 (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은 전조의 제3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설정계약 조건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전항의 계약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를 참작하여 발명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환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실시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실시료와 경상실시료(매출액 대비 정률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실시기간 : 실시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과의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전조의 제3자(이하 '실시자'라 한다)가 자금영세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자의 사업계획, 경영능력, 사업의 폭, 시장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 (기술사업화 지원) ① 산학협력단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부속기관, 교직원 등이 산학협력단이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사용 *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창업 등을 위한 양도 또는 실시권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창업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① 산학협력단은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실용화에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실시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주장, 발명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 등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실시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산학협력단은 실시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계약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실시자의 무단사용과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제한행위)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실시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산학협력단의 기술수준 이상의 실용화, 성공적인 상품화에 대한 확약 또는 보증을 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배상약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의2 (보안관리)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명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장 보상

제24조 (보상의 시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명자 및 해당 교직원 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포함한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 등을 출원 또는 등록한 때
 2. 산학협력단이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교직원 등으로부터 승계하거나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의하여 수익을 얻은 때
 3. 교직원 등이 전항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한 수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하였을 때
 4.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비밀유지 필요성 때문에 출원 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할 때. 다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의해 선출원이 취하되는 경우 및 특허성 결여로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전항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등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지급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직원 등에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위원회가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보상금은 발명자 등이 전직 또는 퇴직 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상의 방법) ① 전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발명 등을 출원 및 등록한 경우 학교는 이를 교원 업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원 업적 평가 반영에 대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② 전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기술료를 얻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④ 기술료에서 제2항의 보상금을 제외한 금원의 적립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⑤ 외부지원연구의 경우 보상금 비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 (보상금 지급시기) 전조 제2항의 보상금은 실시료 또는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기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의2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① 발명자인 교직원은 제24조 내지 제27조에서 결정되는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이의 신청의 당부를 심의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결정내용을 당해 교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등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 등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인출원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28조 (협력의무) 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출원절차, 심사청구 등 당해 지식재산권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 (의견 청취) 산학협력단장과 위원회는 직무발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비밀의 유지) 발명 등을 행한 교직원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명 등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1조 (퇴직 등의 취급) 교직원 등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도 퇴직 전에 신고되어진 발명 등이 직무발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해당 교직원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한 직무발명 등의 취급) 교직원 등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한 직무발명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등의 지분에 한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외국법령에 의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의 취급) 우리나라 법령에 의할 경우 발명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외국 법령에 의하여 발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제재조치) 본 규정을 위반한 해당 교직원 등은 3년간 지식재산 관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직무발명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한다) 임직원 및 그 밖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과기연의 연구성과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과기연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직원 등이 한 발명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직원 등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과기연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승계한다. 그러나 과기연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 등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과기연은 그 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과기연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담당부서) 실시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술실시계약부서에서 담당하고, 그 밖에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제 2 장 권리의 귀속

제6조(발명의 신고) ① 발명을 한 직원 등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직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 신고서(별표 제1호)
2. 발명 설명 자료
3. 양도증(별표 제2호, 자유발명 중 과기연에 양도하는 경우와 직무발명에 한함)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문서로 제출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문서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장이 권리승계의 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그 승계되는 발명자의 지분은 그때부터 각 발명자로부터 과기연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조(출원)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장이 제6조의 양도증서를 받으면 원장 명의로 특허 등을 받기위한 출원을 할 수 있으며 특허 등을 받기위해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출원의 제한)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거나 또는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과기연이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등을 받기 위한 출원을 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직원 등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과기연에서 그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과기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승계) 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 등을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과기연이 승계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특허심의위원회

제12조(특허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해 특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장은 해당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선임급 이상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지식재산관리담당본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출원 여부
4. 직무발명 규정의 개폐
5. 우수발명의 발굴 및 지원

- 6. 발명의 유지 및 소멸 여부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2명 이상의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발명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시행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관리담당 부서장으로한다.

-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제 4 장 발명보상

제18조(보상금의 구분) 과기연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경우에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등록보상금과 실시보상금으로 구분한다.

제19조(등록보상금) 과기연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 등을 받기위한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권 등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3호에 의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20조(실시보상금) 과기연은 특허권 등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성과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따른 실시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발명자의 지분) ① 제19조 또는 제20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이며 해당 발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제19조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23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권 등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권 등이 무권리자 출원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 등을 받기 위한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그 밖의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과기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5조(비밀의 유지) ①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직원 등은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과기연이 승계하되 특허 등을 받기 위한 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연구기밀 또는 노하우로서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과기연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 등은 특허 등을 받기 위한 출원 전에 그 발명내용을 과기연 외에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관리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과기연에 양도하겠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기연에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5조의3(외국출원 발명의 취급) 이 규정은 외국에 출원하는 발명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26조(그 밖의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기술이전 추진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과기연”이라 한다)이 개발한 연구의 성과를 산업계 등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과기연의 기술이전은 연구개발사업 관계법령 또는 연구계약서 등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기술이전 추진

제3조(기술이전심의위원회) ①과기연은 기술 이전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이전 기본계획
2. 이전대상 기술의 선정 및 기술이전 조건
3. 상용화 유망기술의 발굴 및 지원

4. 우수발명의 발굴 및 지원
 5.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의 개폐
 6. 기술이전활동 관리지침에서 정한 심의사항
 7. 그 밖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련된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기술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기술이전담당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책임급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의사록을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술이전담당 팀장으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2명 이상의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⑩ 위원장은 일부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⑪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 ⑫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망기술 발굴) 기술이전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과기연이 사용권한을 보유하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유지하고 자체 기술평가 또는 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이전 유망기술을 발굴하며 사업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5조(기술이전 추진요청) ①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기술이전을 주관하여 추진할 연구자(이하 “기술이전책임자”라 한다)는 연구수행 및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 기술이전이 유망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이전 추진요청서(별표 제1호)를 작성하여 소속 분원·연구소·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담당부서에 기술이전의 추진을 요청한다.
 ② 본조 제1항의 기술이전책임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이전을 주관할 자가 없는 경우, 담당부서 실장을 기술이전책임자로 본다.

제6조(기술이전 검토) ① 담당부서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심의 및 제5조의 기술이전 추진요청에 대해 위원 중 1명을 지명(이하 “사전 검토위원”이라 한다)하여 사전 검토를 의뢰한다.
 ② 검토를 의뢰받은 사전 검토위원은 기술이전 검토의견서(별표 제2호)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1. 특허정보 검색 및 권리범위
2. 기술이전 수요기업의 사업화 역량 및 시장 조사
3. 관계법령
4. 해외 기술이전 시 이전대상기술의 국가핵심기술 또는 전략기술 해당여부

- ④ 담당부서는 기술이전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7조(기술마케팅) ① 담당부서는 기술이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

1. 원내 홈페이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한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2.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혹은 참여
3. 기술마케팅 전문기관에 마케팅 의뢰
4. 그 밖의 기술이전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과기연의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서(별표 제3호)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제2항의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상용화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는 기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케팅 전문기관과의 기술마케팅 추진계약, 의향서, 또는 옵션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기술의 중요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협상전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술이전계약

제8조(기술이전의 방식) ①과기연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이전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실시 허락
2. 권리 양도
3. 기술 출자

② 담당부서는 기술이전대상자가 제9조에 의한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기술실시 허락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다.

④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에 관한 계약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다.

⑤ 기술출자에 관한 사항은 출자회사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술이전 대가) ① 기술이전 대가는 기술가치 평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가치 평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전기술의 개발에 투입한 연구비 총액과 그 연구과제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기술이전 대가를 산정(이하 “연구원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 대상자가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부담능력이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이전 대가의 70%상당액까지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기술이전 대가는 현금, 신용카드, 약속어음 또는 기술이전 대상 기업의 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식 수령의 경우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기술의 가치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기술료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료를 주식으로 수령하는 경우 주식 1주당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술실시계약 체결 예상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업가치평가, 외부투자 등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의 변동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 특허유지기한의 도래,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멸 대상이 되었거나 또는 소멸 예정인 특허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여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이전계약 체결) ① 담당부서는 제3조 제8항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이전계약체결통보서(별표 제4호)를 작성하여 기술이전책임자와 소속 분원·연구소·본부장에 통보한다. 다만, 사업규정에 따른 의무적인 실시계약의 경우 담당부서 실장의 승인을, 사업규정 내에서 계약조건의 협의가 가능한 계약의 경우 기술이전담당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해외기업에 대한 이전기술이 제6조 제3항 4호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기술보증 및 배상) 담당부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술이전계약 시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과기연의 귀책에 의한 해약시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명칭사용) 담당부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기술이전 대상자가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그 밖에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거나,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과기연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기술실시계약

제13조(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은 통상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독점실시 및 전용실시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도록 정한 경우
2.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신청절차와 기술설명회 참여 신청을 공시하였으나 해당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3.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한 신청절차를 공시하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회 이상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그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절차 공시기간 경과 및 기술설명회의 종료 후 30일 내에 통상실시권 허락의 신청이 없는 경우
4. 이전대상 기술의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한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에게 독점적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여 독점적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해야 하는 경우

제14조(기술료의 징수방법) 제9조에 의한 기술이전의 대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착수기본료는 제8조에서 정한 기술이전 대가의 30% 상당액 이상을 계약체결 시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부서는 기술이전 대상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금액을 낮추거나 분할 납부하는 등 납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2. 경상기술료는 매출액에 경상실시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경상실시요율은 예상 매출이익, 이전대상 기술의 기여도, 기술이전 대상자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최저기술료는 제9조에서 정한 기술이전 대가에서 선급기술료를 공제한 금액을 실시기간으로 나누어서 정한다.

4. 정액기술료는 필요한 경우 1회 또는 수회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실시계약 관리) ① 담당부서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술 실시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이전기술 상용화 실태조사표(별표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이전 기술의 실용화 진행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생산개시일을 통보한 실시자로부터 매년 매출액 등 기술료 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경상기술료 또는 최저기술료의 납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실시계약의 변경) 기술이전 대가, 실시권의 종류, 실시권의 범위, 기술이전기업 변경 등 기술실시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사전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술이전 담당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한 후 이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담당부서 실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술이전기업 명칭 변경
2. 기술이전기업 대표자 변경
3. 기술이전책임자의 퇴직에 따른 변경

제17조(기술실시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과기연의 기술이 기업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과기연에 계약해지를 요청 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과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와 사전 검토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며, 계약해지 여부 및 해약에 따르는 조치사항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부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과기연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수령한 기술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실시자가 기술실시계약서에 의한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30일의 기한을 두어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기술이전담당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시자가 모든 기술 자료를 반환하고 과기연의 허락 없이 연구결과를 사용하거나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붙임-4

기술이전계약서 표준(안) (사례)

1. 서울대학교

기술이전(라이센싱) 계약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甲'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O (이하 '乙'이라 한다)은 '甲'이 보유하고 있는 “_____ 기술”을 기술도입 희망자 '乙'에게 제공하고 실시권을 허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본 계약에서 '계약기술'이라 함은 하기에 명시한, '甲'이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 또는 '甲'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Know-How를 말한다.
 - 등록(출원) 특허 제 OOOO호
 - (기술의 명칭)
2. 본 계약에서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본 계약에서 '계약제품'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및 생산장치를 말하고, 중간체 또는 원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중간체 또는 원료를 포함한다.
4. 본 계약에서 '개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기술을 의미한다.
5. 본 계약에서 '선행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甲'이 이전에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6. 본 계약에서 '파생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에서 갈려 나왔고 '甲'이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7. 본 계약에서 '관련기술'이라 함은 '계약기술'과 관련되었지만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甲'이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8. 본 계약에서 '상업화'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을 올린 것을 의미한다.
9. 본 계약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 '계약제품'의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다.
10. 본 계약에서 '생산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제품'을 최초로 생산한 날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계약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전용(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甲'은 '乙'이 본 '계약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③ '乙'은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본 '계약기술'에 대한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으며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허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계약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 ④ 하청제조에 관한 사항은 양 당사자 간의 사전협약에 의한다.
- ⑤ '甲'이 본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기술'로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乙'은 본 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실시권을 가진다. 단, 산업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산업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乙'이 별도로 부담한다.

- ⑥ ‘계약기술’에는 제1조 제1항에 명기된 것만을 의미하며 그 이외의 ‘甲’이 행한 ‘선행기술’, ‘관련기술’, ‘파생기술’,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실시기간)

-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되, 계약연장에 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乙’이 계약기술의 상업화에 태만하거나 상업화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甲’은 ‘乙’에게 통보하고 90일 후에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③ ‘乙’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생산개시일’을 서면으로 ‘甲’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생산개시일’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로 한다. 단, ‘乙’의 사업화 의지가 있으나 설비투자 및 용도 개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甲’의 서면동의를 득하여 ‘생산개시일’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술료)

기술료는 선급기술료 및 경상기술료로 구성된다. 본 조항은 제2조 제2항에 의거 ‘乙’이 ‘계약기술’의 실시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 ① ‘乙’은 선급기술료로 金000만원整(₩00,000,000)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乙’은 본 ‘계약제품’ ‘매출액’의 X%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를 ‘생산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2월 28일까지, 제5조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다. 단, 경상기술료의 최저실시료를 金000만원整(₩00,000,000)으로 하며, 연도별 경상기술료가 최저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실시료를 당해연도 경상기술료로 간주한다.
- ③ ‘乙’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생산개시일’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경우,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의 최저실시료를 ‘甲’에게 지급한다.
- ④ ‘乙’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乙’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더한 금액을 연체료로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甲’이 ‘乙’에게 본 ‘계약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제1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⑥ 모든 기술료는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제5조(기술료의 정산 및 보고)

- ① ‘乙’은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기술료를 정산하여 익년도 2월 28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생산개시일’이 당해 연도의 6월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익년도에 포함하여 정산하며, 만료 연도에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乙’은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개시일’을 ‘甲’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乙’은 기술료 및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실시보고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회계법인이 발행하는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실시료 지급 시에 ‘甲’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회계기록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甲’은 필요에 따라 직접 또는 ‘甲’이 선정한 대리인을 파견하여 본 항의 실시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실사할 수 있으며 ‘乙’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실사결과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료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乙’은 그 차액의 2배를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차액이 3% 이상인 경우 실사를 위한 제반 비용을 ‘乙’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제5항 또는 제4조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기술의 실시)

- ① ‘甲’은 본 ‘계약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乙’에게 제공하며, 본 ‘계약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그리고 ‘상업화’에 대해서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② ‘甲’은 ‘乙’이 기술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단, 기술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乙’이 부담한다.

제7조(기술의 개량 등)

- ① 본 계약기간 중 ‘乙’이 본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개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사전 통보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기로 하며,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 소유로 한다.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 비용은 ‘乙’이 부담하며, ‘乙’은 본 ‘계약기술’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권을 갖는다. 단, 제2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이 허용된 경우에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유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② 본 계약체결 후 ‘甲’은 제3자와 ‘계약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甲’과 ‘乙’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연구결과의 우선적 실시권을 부여한다. 단, ‘甲’이 정부출연금 등 ‘乙’ 이외의 제3자가 부담한 연구비로써 수행한 ‘개량기술’을 ‘乙’이 실시코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투입된 원금연구비 이상을 ‘甲’에게 상환기로 한다.
- ③ ‘甲’과 ‘乙’이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乙’은 개량기술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8조(명칭의 사용)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甲’이 ‘乙’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甲’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 ① ‘乙’은 ‘계약기술’에 대해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 ② ‘甲’은 ‘계약기술’을 ‘乙’ 이외의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단, 학술적인 용도로의 공개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의 적용기간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10년까지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甲’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乙’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乙’이 제4조의 기술료 지급을 정당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 2. ‘乙’이 제3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乙'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乙'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본 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乙'은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시정을 요구한 후 '甲'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甲'이 '乙'의 동의 없이 '계약기술'을 제3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한 경우. 단, 제2조 제1항에서 통상실시권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타 '甲'에 의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乙'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3.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 ④ 본 계약서 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甲'은 기납부한 실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乙'은 해지일까지의 경상기술료를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乙'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기술' 및 관련 상표, 상호를 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기술'에 대한 기술자료 전부를 '甲'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 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1조(일부 무효의 효과)

-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이든지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본 계약에 관한 정당한 권한 있는 자의 기명 날인한 합의서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乙'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乙'이 본 '계약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乙'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甲'은 본 '계약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13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손해배상)

'甲'과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甲'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공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 ①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甲’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착오는 ‘乙’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 ②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제18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증면제 및 불가쟁)

- ① ‘甲’은 본 ‘계약기술’의 특허유효성 및 등록유지를 보증하지 않으며, ‘乙’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로 인해 ‘乙’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乙’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본 ‘계약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한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乙’이 더 이상 ‘계약기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제10조 제3항에 따른다.
- ③ ‘乙’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툰 경우에 ‘甲’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② 본 계약은 ‘甲’과 ‘乙’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甲’과 ‘乙’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하며,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이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단, ‘甲’과 ‘乙’간에 기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및 양해각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甲’ 및 ‘乙’ 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기술이전계약서[일반형-경상기술료 방식]

(기술명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과 (주) ○○○○ (이하 “실시권자”라 한다)는(은) 연구원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아래 기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기술이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계약 주요 조건]

| | | | |
|--|-----------------------------|---|------------------|
| 1. 기술명 | | | |
| 2. 계약기간 | | 20 . . . ~ 20 . . . | |
| 3. 기술료 | 착수기본료 (부가세포함) | 원 | |
| | 매출정률사용료율 | %(부가세별도) | |
| 4.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 완료 등 | 기술지도가 있는 경우 | 기술지도기간 (자료 제공기간 포함) | 계약일로부터 ()개월 |
| | | 기술지도비 | (원) 부가세포함 |
| | |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 기술지도 완료 후 1개월 이내 |
| | 기술지도 등을 포함한 사후 지원 컨설팅 | 컨설팅 기간 | |
| | | 컨설팅 비용 | (원) 부가세포함 |
| | 기술지도가 없는 경우 | 자료제공 기간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기술이전완료확인서 제출기간 | |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 |
| 5. 착수기본료 납부 (실제납부기술료) 또는 (사후지원 컨설팅 비용) | 전액납부 | 납부일 : 20 . . . 납부액 : 원 | |
| | 분할납부 | 1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 |
| | | 2차분 납부일 : 20 . . . 납부액: 원 | |
| | | ※ 납부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행사 | |
| 6. 기술료, 기술지도비, 사후지원 컨설팅비용 납부계좌 |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연구원”이 “실시권자”에게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에 기재된 특허 및 기술자료(이하 “기술”이라 한다)를 전수하고, “실시권자”가 “기술”을 실시하는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계약 기간, 금액,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권의 허여 및 범위) ① “연구원”은 “실시권자”에게 “기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② “실시권자”는 “연구원”의 서면 승인없이 “본 계약”에 따라 허여받은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 승계, 양도 또는 재허여 할 수 없다.

③ “연구원”은 필요한 경우 “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기술”에 관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실시권자”는 “기술”에 오픈소스SW가 있는 경우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선스 내용을 확인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오픈소스SW에 내재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시권자”에게 귀속되며 “실시권자”의 위반으로 인해 “연구원”에게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권자”는 “실시권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연구원”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하되,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실시권자”가 전항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의사를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재량에 의해 “실시권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시권자”는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의 제공) “연구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을 “실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의 개량) ① “실시권자”가 “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하거나, “기술”을 기초로 개발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거나 “개량기술”에 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원”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본 기술이전 과정에서 발생된 “개량기술”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개량기술”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과 “실시권자”가 공동소유한다.

③ “연구원”과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개량, 개선한 “개량기술”은 각자 소유한다.

④ “연구원”과 “실시권자”가 공동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 비용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한다. 만약 일방이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연구원” 또는 “실시권자”는 지분이 상대방에 귀속되거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의 확보, 유지 등에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실시권자”는 “개량기술”로 인한 매출 역시 “본 계약”에 의한 매출로 보고 제8조제3항에 따른 매출정률 사용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개량기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개량기술”로 인한 매출의 매출정률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도 및 사후지원 컨설팅) ① “연구원”은 “실시권자”의 기술지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이 정한 기술지도 조건에 따라 “실시권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기술지도 기간 동안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② 전항의 기술지도에 대하여 “실시권자”는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기술지도비를 계약체결 시 현금으로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은 “실시권자”의 기술지도에 대한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지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지도비는 “실시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기술지도기간 중 “실시권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술지도가 중단되는 경우 기술지도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 ④ “사후지원컨설팅”의 지원범위는 “본 계약”으로 이전된 “기술”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기술” 관련 컨설팅으로 한정한다.
- ⑤ “사후지원컨설팅”은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기술지도 기간 동안 진행하며, “계약 주요 조건”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7조(기술이전의 완료) ① “실시권자”는 기술지도가 있는 경우 기술지도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술지도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4의 양식에 따른 “기술이전완료확인서”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권자”는 기술이전의 완료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위 기간 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권자”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만약 “실시권자”가 전항을 위반하여 위 기간 내에 이의 없이 “기술이전완료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본 계약”에 따른 기술이전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항의 “기술이전의 완료”라 함은 “연구원”이 제4조의 기술자료 제공 및 제6조 기술지도에 관한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의미한다.

제8조(기술료 등) ① 기술료는 착수기본료(Initial Payment)와 매출정률사용료(Running Royalty)로서 구성된다.

② “실시권자”는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착수기본료를 “연구원”에 지급한다.

③ “실시권자”는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매출정률사용료율과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한 이전기술의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정률사용료로 “연구원”에 지급한다. 다만,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기술”의 실시 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의 하에 매출정률사용료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이라 함은 “기술”을 사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용역 포함)와 관련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기술”이 다른 기술과 결합되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 “기술”이 사용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⑤ “실시권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조(기술료 등의 납부방법) ① “실시권자”는 착수기본료를 “본 계약” 체결시 현금으로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연구원” 계좌를 통해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착수기본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액에 대한 납부 확약을 위하여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 주요 조건”에 기재된 착수기본료 분할납부일에 분할납부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도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하여 미납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실시권자”는 제8조 제3항의 매출정률사용료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판매개시년도의 경우는 판매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를 계산 분기로 하여 익년도 3월말까지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실시권자”가 기술료의 지급을 지체할 때는 상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출정률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가 “연구원”에 매출정률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실제 발생액보다 5% 이상 축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실시권자”는 매출정률사용료 및 연체이자와는 별도로 “연구원”에게 위약벌로 당해연도 매출정률사용료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전항에 따라 “실시권자”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위약벌은 “연구원”의 “실시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매출액의 계산 기준) ① 제8조제4항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국내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만으로는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연구원”이 결정한다.

② 매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관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며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이 다른 주요부품이나 제품과 결합하여 판매될 경우, “기술”을 실시하여 생산한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해당 국가에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의 당시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중의 평균 국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제11조(상용화 실태조사 및 증빙자료 제출) ①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상용화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기술”에 대한 상용화 실태조사표와 제10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기술료 감사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1부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매출액”과 관련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권자”는 상용화 실태조사표를 “기술”의 실시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연구원”이 “실시권자”에게 특정 제품(서비스 포함)을 지정하여 그에 대한 증빙(소스코드, 기술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실시권자”는 “연구원”으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실시권자”를 대상으로 이전기술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관리 실태 등을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실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원”과 협의하여 본 조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매출액”의 조사) ①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제11조에 의해 제출한 기술료 감사보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매출액”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전문가는 “매출액”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시간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실시권자”의 회계장부, 기술자료와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매출액” 및 해당 연도의 매출정률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원”은 제1항에 의거 위촉된 전문가의 조사결과 제11조에 의해 제출된 기술료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정률사용료의 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 조사에 따른 비용을 “실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정률사용료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9조제5항에 따르기로 한다.

⑤ “연구원”은 제11조에 의하여 제출된 기술료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매출정률사용료와 제3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매출정률사용료가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실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실시권자”가 기술료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원”이 산정한 매출정률사용료를 “실시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시권자”는 “연구원”에게 “연구원”이 청구한 차액 또는 매출정률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의 보완) ① “실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원”은 “기술” 이외의 기술자료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기간 이후의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이하 통칭하여 “기술보완”이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기술보완을 위하여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연구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보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실시권자”가 부담한다.

제14조(기술이전 참여 등의 제한)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실시권자”에 대하여 “연구원”이 실시하는 기술이전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실시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실시권자” 또한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실시권자”는 “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실시에 대하여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연구원”에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보장 등) ①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상대방의 상호 동의없이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중요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부(국회, 감사원, 정부부처, 관리기관 등)의 자료요구에 따라 제출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실시권자는 “기술”에 대해 연구원의 사전 승인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로 공개,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전 각항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존속한다.

제17조(“연구원”의 보증의무 면제 및 민,형사상 면책) ① “연구원”은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의 유효성(등록 가능성을 포함),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 기타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본 계약”에 의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기술”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기술”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시권자”의 어떠한 손해, 손상 또는 인적 상해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연구원”은 “실시권자”가 “본 계약”의 필요성을 판단한 이상, 본 “기술”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사업화에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명칭의 사용제한) “실시권자”는 “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선전, 판매촉진, 쟁송 등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연구원”이 “실시권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연구원” 또는 그 소속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연구원” 또는 “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 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이를 불이행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제8조의 기술료 지급을 “연구원”과 사전 협의없이 지연하는 경우
2. “연구원” 또는 “실시권자”가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실시권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4. “실시권자”가 제11조제1항의 상용화 실태조사표, 기술료 감사보고서,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연구원”과 사전 협의없이 지연하는 경우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실시권자”가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신청, 워크아웃 신청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연구원”이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후 “실시권자”가 2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원”이 제12조에 의거 조사를 진행(조사통보 등)하였으나 “실시권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4. “실시권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5. “실시권자”(실무책임자 포함)가 별지 3 청렴유지 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실시권자”가 “기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상용화 가능성, 시장 적합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연구원”이 이에 동의한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시권자”는 해지일까지의 매출정률사용료를 정산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실시권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까지 취득한 제반자료를 “연구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야 한다.
- ⑤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제16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⑥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제8조 제2항의 착수기본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연구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실시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착수기본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청렴유지 계약) “연구원”과 “실시권자”는 “본 계약”의 원활한 이행 및 준수를 위해 쌍방의 책임자에게 별지 3의 청렴유지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감독한다.

제22조(주요사항의 변경) “실시권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연구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구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시권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실시권자”가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구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연구원”과 “실시권자” 간의 모든 의견교환, 구두합의,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의 내용은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변경될 수 없다.

제24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연구원”과 “실시권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 별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2. 고객 요구사항 점검표
 3. 청렴유지 계약서
 4.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연구원”과 “실시권자”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5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운영 결과 보고 (예시)**

1. 지식재산 전담조직의 인력 및 예산현황

1-1) 전담인력과 전문인력

| 전담인력 | | | 전문인력 | | | | | | | | | | | 전문 인력 비율 (B/A) | |
|------|------|-----------|------|-----------|-------------|-------------|----|------|-----------|-------------|-------------|----|-----------|-------------------------|--|
| 정규직 | 비정규직 | 합계 (A) | 정규직 | | | | | 비정규직 | | | | | 합계 (B) | | |
| | | | 변리사 | 기술 거래사 | 기술가치 평가사 | 박사학위 소지자 | 소계 | 변리사 | 기술 거래사 | 기술가치 평가사 | 박사학위 소지자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전담인력 : 해당년도 현원 기준
 * 전문인력 : 변리사,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증 보유자와 박사학위 소지자
 예) 변리사와 중복되는 경우 변리사에만 1명 기재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기재

1-2) 지식재산 출원·심사·유지 비용(운영현황보고 이전 회계연도 기준)

| 성과확산전담조직 예산(단위: 만원) | | |
|---------------------|------|----------------|
| | 국내출원 |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
| 출원 및 심사비용 | | |
| 유지비용 (등록료 및 연차료) | | |

2.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실적 (최근 5년)

(단위 : 건)

| 연도 | 특허 | | | | | | | 특허 외 산업재산권 | | 저작권 |
|-----|----|----|----|--|----|----|----|---------------|----|-----|
| | 출원 | | | | 등록 | | | 출원 | 등록 | |
| | 소계 | 국내 | 국외 | | 소계 | 국내 | 국외 | | | |
| PCT | | |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당해년도 기준 출원·등록 건수
 * 동일기술을 다수국에 복수 출원(국외일반)·등록하는 경우 모두 인정. 단, PCT 출원은 1건으로 기재
 * 특허 외 산업재산권 :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3-3) 기술이전계약 등 지재권 현황 (최근 5년)

(단위 : 건)

| 연도 |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통해 이전된 지식재산권 | | | | | | | | | | |
|----|-------------------------|--------------|----|------|----|------|--------------------|----|------|----|--|
| | 소계 | 이전대상별 | | | | | | | | | |
| | | 대기업(해외기업 포함) | | | | | 중소·중견기업 등(해외기업 포함) | | | | |
| | | 소계 | 유상 | | 무상 | | 소계 | 유상 | | 무상 | |
| 특허 | 특허 외 | | 특허 | 특허 외 | 특허 | 특허 외 | | 특허 | 특허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기술이전 계약체결을 통해 이전된 지식재산권 건수 : 계약체결을 통해 이전된 지식재산권의 건수를 모두 포함
 - 예시) 1건의 계약체결을 통해 특허 3건이 이전된 경우 3건 모두 기재

* 특허 외 : 특허 외의 산업재산권(실용신안, 상표 등) 및 신지식재산권(영업비밀, 프로그램 등) 등 지식재산권 모두 포함하나, 노하우(기술자문, 지식전달 등)는 제외

4. 지식재산 등 포기 현황 (최근 5년)

| 연도 | 포기 대상 | | 양도 | | | 권리소멸 | | | |
|----|-------|----|----|----|--------------|------|--------|--------|--------|
| | 대상 | 건수 | 무상 | 유상 | | 총 건수 | 포기 사유 | | |
| | | | 건수 | 건수 | 기술료 수입 (백만원) | | ① (건수) | ② (건수) | ③ (건수) |
| | 특허 | | | | | | | | |
| | 특허 외 | | | | | | | | |
| | 특허 | | | | | | | | |
| | 특허 외 | | | | | | | | |
| | 특허 | | | | | | | | |
| | 특허 외 | | | | | | | | |
| | 특허 | | | | | | | | |
| | 특허 외 | | | | | | | | |
| | 특허 | | | | | | | | |
| | 특허 외 | | | | | | | | |

[작성요령]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 기술실시 계약의 미체결 및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포기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포기 현황을 작성

* 포기되는 지식재산권의 포기 사유에 해당되는 건수를 기입

① 자산실사를 통해 기술수명주기(Life Cycle)가 쇠퇴되었거나 낙후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② 연구자 등 자체검토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 등이 낮아 활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식재산권
 ③ 기타

5. 기술료 수입 및 사용 현황 (최근 5년)

4-1) 기술료 수입 (최근 5년)

| 연도 | 정부 지분 기술료 | 총 합계 | 계약별 | | | | 주체별 | | | | 형태별 | | | | 국내외별 | | | | |
|----|-----------------|---------|-----|----|-----------|-----------------|-----|-----|----------------|----|-----|----------|----------|----------|------|----|----|----|----|
| | | | 정액 | 경상 | | | 소계 | 대기업 | 중소 중견 기업 | 기타 | 소계 | 기술 양도 | 라이 선스 | 기술 자문 | 기타 | 소계 | 국내 | 국외 | 소계 |
| | | | | 소계 | 착수 기본료 | 매출 정률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당해년도(당해년도 12월말까지)에 징수한 기술료

* 부가세 및 연구소기업 지분액 포함. 각 항목별(계약별/주체별/형태별) 징수액에 부가세 포함

4-2) 기술료 사용 (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 연도 | 전문기관 납부 | 참여연구자 보상 | 성과활용 기여자보상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유지 | 연구개발재 투자 | 기관 운영경비 | 기타 | 사용금액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특허 출원 전 심의 여부

❖ 귀 기관에서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여부를 표시

| | | |
|-------------------------------------|--------------|----------------------------------|
| ①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¹⁾ 수행 여부 | 수행 | 미수행 |
| | (아래 화살표로 이동) | (미수행시 ⇨아래 특허출원(전) 사전평가 미수행시로 이동) |



|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시 | | | |
|--|--|--------------------|----------------------|
| ② 전체 발명신고 대비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비중 | 전체 발명신고가 100이면, 출원(전) 평가를 실시하는 비중은 (%) | | |
| ③ 전체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 비중 | 전체 발명신고가 100이면, 특허 출원 비중은 (%) | | |
| ④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주체 (복수응답 가능) | 내부적으로 수행 | | 외부 위탁 방식으로 수행 |
| | 내부 전문가 | 외부전문가 | |
| ⑤ 출원(전) 사전평가 수행 방식에 따른 수행 비중* <small>* 전체 수행이 100이면, 각 방식의 비중 (예 : 간이 50%, 심층 0%, 자체 50%)</small> | 간이평가 ²⁾ | 심층평가 ³⁾ | 자체평가 ⁴⁾ |
| | % | % | % |



| ⇨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미수행 시 | | |
|-------------------------------|---------------------|--|
| ⑤ 출원(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 | 미수행 이유 (복수응답 가능) | 우선순위 ⁵⁾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
| a. 시간, 비용 부담 | | |
| b. 인력 부족 | | |
| c. 해당 평가를 수행할 정도로 특허가 발생하지 않음 | | |
| d.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 |
| e. 성과평가 특성상 특허 양적 관리가 여전히 중요 | | |

[작성요령]

- 1) 특허 출원(전) 사전평가 : 개발한 기술이 특허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불량 특허출원 방지, 특허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기술평가, 시장(제품)평가, 사업성 평가, 선행기술 조사 등을 의미
- 2) 간이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스타밸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온라인 기술평가(NTB) 등을 의미. 구체적으로 간이기술가치평가시스템(스타밸류)은 소득접근법(현금흐름할인 모델과 실물옵션 모델)과 시장접근법(로열티절감 모델, 이익배분 모델, 거래사례비교 모델), 비용접근법(시장대체원가 모델, S/W가치평가 모델) 등을 활용해서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 일선 연구자나 연구기관은 스타밸류에 회원가입 이후 평가모델선택 도우미와 제품수명주기 도우미와 같은 기능들을 활용해서 기술 또는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음
- 3) 심층평가 : 기술평가전문기관이 심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
- 4) 자체평가 : 조직 내 전문가 또는 자체평가 tool을 활용하여 평가한 경우
- 5) 우선순위
 - 출원(전) 사전평가, 선별평가 : 선택한 “미수행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서대로 1부터 5까지 입력 (예 : 시간부담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응답할 경우, 인력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인력부족 1, 시간부담 2 표시)

7. 포트폴리오 구축과 패키징 활동 (해당란에 V 표시)

| | | | |
|---------------|---------------|-----------------|--------------------|
| ① IP 포트폴리오 구축 | 구축함 | | 구축하지 않음 |
| | IP 개발 시 구축 | IP 활용 시 구축 | |
| | ① | ② | ③ |
| ② IP 패키징 | IP 패키징을 수행함 | | IP 특허 패키징을 수행하지 않음 |
| | 기관 자체 IP만을 대상 | 자체특허+ 외부기관 특허대상 | |
| | ① | ② | ③ |

[작성요령]

- 1) 특허포트폴리오 : 단일 기관이 핵심 특허의 확보에 그치지 않고, 제품 생산과 사업에 필요한 관련 특허 혹은 개량 특허를 다양하게 획득함을 의미
- 2) 특허패키징 : 효과적인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위해 단일 혹은 다수의 기관이 특정 기술·제품에 대한 공동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을 의미

8. 자산 실사와 활용 (해당 란에 V 표시)

| 구분 | IP자산실사를 함 | | | | | IP 자산실사 미 실시 |
|------------------------------------|-----------|-----|------|--------------|------|--------------|
| | 분기별 | 반기별 | 연 1회 | 기타 (실시주기 기입) | 비정기적 | |
| 8.1. IP 자산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① | ② | ③ | | ④ | ⑤ |

*8.1번 IP자산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8-2번] ~ [8.4번] 문항 답변

| 구분 | 전혀 그렇지 않다 | 거의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8.2. IP 자산실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구분 | 정량평가 (K-PEG, SMART 등) | 정성평가 (전문가 자문, 변리사 활용 등) | 정량·정성평가 혼용 |
|--|-----------------------|-------------------------|------------|
| 8.3. 주로 활용하는 IP 자산실사 방법은 무엇인가? ²⁾ | ① | ② | ③ |

| 구분 | 있음 | 없음 |
|---|----|----|
| 8.4. IP 자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는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가 있는가? | ① | ② |

[작성요령]

- 1) 자산실사 활용 분야 : 이전대상 기술의 발굴 및 라이선싱, (사업화 목적의) 추가R&D, 기술마케팅전략, 향후 연구방향 수립, 미활용 특허에 대한 대책 수립 등
- 2) 자산실사 방법
 - 정량평가 :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K-PEG이나 발명진흥협회의 SMART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정성평가 :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자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나 변리사 등을 활용함

국가연구개발 지식재산 관리 안내서

